

# 일본의 목제품 비관세장벽 현황과 실태조사 보고서

2010. 6.

보고자: 민 경 택  
(산림정책연구실)

## I. 출장개요

### 1. 출장 필요성과 목적

- 목제품 무역에서 관세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비관세장벽이 점차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음. 비관세장벽에는 인증, 라벨링, 환경규제 등이 있음. 이러한 장벽은 우리나라 목제품 수출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일본 목제품 시장에서 비관세장벽의 현황과 운용실태, 시장동향에 대하여 조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본 조사는 일본의 목제품 시장동향과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는 목제품 인증제도의 파악을 목적으로 함.

### 2. 출장내용

- ☐ 국가 및 지역: 일본 동경
- ☐ 출장자: 산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민 경 택
- ☐ 출장기간: 2010. 5. 24(월) ~ 5. 28(금) (4박 5일)
- ☐ 주요 출장일정 및 조사 내용

| 일 시                | 내 용                                                | 비 고                                                                                                 |
|--------------------|----------------------------------------------------|-----------------------------------------------------------------------------------------------------|
| 5.24(월)오 전         | 이동(김포공항출발)-하네다도착                                   |                                                                                                     |
| 13:00~17:30        | 일본 목조주택시장에서 인증제도의 동향, 센터가 수행하는 우량제품인정업무(AQ 마크)의 내용 | 財)日本住宅・木材技術センター,佐野敦子(認証部AQ담당)<br>東京都江東區新砂3-4-2<br>Tel 03-5653-7581,<br>Fax. 5653-7582               |
| 5.25(화)10:00~11:30 | 목제품 에코마크 운용현황                                      | (재)일본환경협회 에코마크사무국大澤亮(基準・認証課主任)<br>東京都中央區日本橋馬喰町1-4-16 馬喰町第一ビル9階<br>T. 03-5643-6253<br>Fax. 5643-6257 |
| 14:00~18:00        | 주택건자재 시장                                           | 다이켄공업주식회사<br>東京都千代田區外神田3-12-8<br>住友不動産秋葉原ビル3F                                                       |
| 5.26(수)10:00~11:30 | 목재합판산업의 동향                                         | 목재합판박물관<br>東京都江東區新木場1-7-22新木場タワー3F・4F                                                               |
| 14:00~16:00        | 일본 목재산업의 동향                                        | 森林総合研究所 임업경영시스템연구실,岡裕康(실장)                                                                          |
| 5.27(목)10:00~12:00 | JAS 임산물규격의 운용현황과 상호인증가능성 타진                        | 농림수산성 消費安全局 表示・規格課林産物規格班<br>早川雄司(課長補佐)<br>宮崎勝司(林産第二係)<br>Tel. 03-6744-7139<br>Fax 6744-2369         |
| 13:00~15:00        | 섬유판공업의 동향과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대한 자주표시제도 운용                | 일본섬유판공업회<br>-東京都中央區八重洲1-515田中八重洲ビル<br>奈良義幸(업무부장)<br>Tel. 03-3271-6883,<br>Fax. 3271-6884            |
| 5.28(금)10:00~12:00 | 일본 목재공업의 현황                                        | 국제전시장-환경전, 전자재전<br>동경보드공업주식회사<br>東京都江東區新木場2-11-1<br>Tel. 03-3522-4138<br>Fax. 3522-4137             |
| 오 후                | 일본 출국-김포공항 도착                                      |                                                                                                     |

## II. 조사 결과

가. (재)일본주택·목재기술센터

□ 면답자 : 佐野敦子 (認證部AQ담당)

- AQ인증(우량목질건재 등의 인증)은 JAS와 JIS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목질건재 등에 대해서 품질성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하고 소비자에 대해 안전성 및 거주성이 우수한 제품의 제 공을 목적으로 일본주

|                                                                                   |      |
|-----------------------------------------------------------------------------------|------|
|  |      |
| <small>この商品は、当センターの定める品質基準を満たしていることを確認されたものです。<br/>附随人 日本住宅・木質技術センター</small>      |      |
| 認証番号                                                                              |      |
| 製品名                                                                               | 認証区分 |
| 認証業者 (登録先)                                                                        |      |
| 製造業者                                                                              | 製造工場 |
| 製造年月                                                                              |      |
| 使用上の注意事項                                                                          |      |



- 택·목재기술센터가 인증하는 것이며, 인증제품에는 AQ마크를 표시하도록 되어있음.
- 수요자의 니즈는 다양화, 고도화하고 있으며 목질건재도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데, JAS와 JIS가 이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임.

- AQ는 이러한 기술개발에 의한 신제품에 대해서 기동적으로 품질성능기준의 정비를 행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니즈에 대응하고 있음. AQ는 Approved Quality 의 약칭으로, 인증한 목질건재에는 다음 그림과 같은 AQ마크가 표시됨.
- AQ인증 제품의 품질성능은 일본주택·목재기술센터가 정하는 품질성능평가기준에 있는 시험항목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되는 제품임.

- 일본 국토교통성은 목조주택의 장기보유를 권장하여 우수한 성능의 목조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론, 융자 등에서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목조주택의 성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크의 취득이 중요함.
- AQ인증의 신청은 직접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지만,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행한 품질성능의 안정성에 대해서 품질안정도조사자료 및 일본주택·목재기술센터에 등록된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서 신청하게 됨.
- AQ인증을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우량목질건재 등 인증수수료 규정에 인증대상품목마다에 정하고 있음.
- 현재 202사 361품목이 유효한 인증마크를 보유하고 있음(2010년 3월 1일)

표. AQ 마크 인증실적

| 연도    | 인증실적(건)                |
|-------|------------------------|
| 2004년 | 124건 (신규 24건, 갱신 100건) |
| 2005년 | 145건 (신규 32건, 갱신 113건) |
| 2006년 | 115건 (신규 19건, 갱신 96건)  |
| 2007년 | 79건 (신규 18건, 갱신 61건)   |
| 2008년 | 121건 (신규 30건, 갱신 91건)  |

나. (재)일본환경협회 에코마크 사무국

□ 면담자: 大澤 亮(基準・認証課主任)

- 에코마크는 환경에 부하가 적거나 환경보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붙이는 마크임. 이러한 상품을 인증하여 소비자가 환경배려형 상품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1989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 2004년12월말 45상품분야에서 5074상품이 에코마크 인정을 받고 있음.
- 2001년4월부터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의 개별법의 하나로서 '국가등

에 의한 환경물품등의 조달의 추진등에 관한 법률(그린구입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은 순환형사회의 형성을 위해 상품의 공급면의 노력에 더해 수요면에서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제정된 것임.



- 그린구입법에서는 특정조달품목 및 이들의 조달에서 판단기준이 정해져있음. 특정조달 품목에 대해서는 년도마다 조달목표를 세우고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환경 물품을 조달하도록 하며 그 실적을 공표하는 것이 성청 및 독립행정법인 등의 국가기관에 대해서 의무화되어 있으며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대해서는 이러한 노력을 행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이러한 그린구입법하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체에 의한 그린구입이 추진되고 있음. 또, 근년은 환경에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 의한 자주적인 그린구입의 노력도 정착되고 있음.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조직적인 그린구입에서 에코마크는 환경배려형 상품을 선택하는 유효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음.
- 목재를 사용한 상품에 관한 에코마크의 상품유형은 No. 111 '목재등을 사용한 보드류 Version 2.2', No 115 '간벌재, 미이용목재 등을 사용한 목제품 Version 2'가 있음. 이외에 No. 112 '문구와 사무용품 Version 1', No 130 '가구 Version 1' 및 No. 131 '토목제품 Version 1'에 나무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환경에 대한 배려를 중시한다고 해도 성능이 나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JAS 또는 JIS의 취득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섬유판과 파티클보드에서 에코마크를 부착한 제품의 시장규모와 판매량 점유율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와 같으며, 큰 증감은 보이지 않음.
  - 목질보드의 각 제품별 시장규모는 국내생산품과 수입제품을 합쳐 하드보드 50억엔규모, MDF 가 370억엔규모, 인슐레이션보드가 100억엔규모, 파

티클보드가 540억엔규모임. 목질보드시장에서 파티클보드, MDF가 2대시장이 되어있고 두 시장을 합치면 금액기준으로는 목질보드시장 전체의 85%를 점하고 있음.

표. 에코마크 인정상품의 추정 시장점유율

|         | 2003년도<br>수량기준 | 2004년도<br>수량기준 | 2004년도<br>금액기준 |
|---------|----------------|----------------|----------------|
| 하드보드    | 20.0%          | 22.6%          | 24.2%          |
| MDF     | 61.8%          | 61.5%          | 61.4%          |
| 인슐레이션보드 | 75.6%          | 75.9%          | 73.8%          |
| 파티클보드   | 65.1%          | 62.5%          | 55.0%          |

자료: 에코마크 사무국(2005)

- 목질보드는 리사이클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에의 배려를 전면에 내세우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본의 주요기업에서 에코마크 취득비율은 매우 높음.
- 시장규모가 큰 파티클보드 및 MDF 시장에서 에코마크 인정상품의 추정 시장점유율은 60% 전후가 되어 있음. 파티클보드 시장에서는 저가의 수입제품의 비율이 높아 에코마크 인정상품의 시장점유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어 있음.
- MDF는 다용도로 활용되는 특성이 있어 강도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에코마크 인정기준에 부적합한 포름알데히드 방산등급의 F☆☆☆☆제품이 활용되는 경우도 많음.
- 인슐레이션보드 시장에서 에코마크 인정상품의 추정시장점유율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은 타타미마루용이 전체의 7할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낮은 제품이 요구되고 압도적 점유율을 자랑하는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에코마크를 취득해온 결과임.

## 다. 다이켄공업(주)

- 다이켄공업의 환경보호에의 노력은 다음과 같음.
  - 1952년 다이켄보드 목질섬유판 사업에 착수.
  - 1959년 재·미이용자원을 사용한 다이켄보드를 발매함.
  - 1964년 재·미이용자원을 사용한 다이로톤을 발매함
  - 1989년 경영이념에 환경을 반영한 ‘사람과 공간, 환경의 조화’를 제정함.
  - 1992년 타타미보드 등 목질섬유판제품이 에코마크를 취득함
  - 1993년 다이로톤이 에코마크를 취득함
  - 1996년 미이용자원을 사용한 테크우드(MDF)를 발매함.
  - 2002년 말레이시아에서 조립을 시작함. DAIKEN환경선언 제정.
  - 2005년 조립목을 기재로 한 에코베이스 플로어보드를 개발.
  - 2006년 재·미이용자원을 사용한 가정용제습제 제습공방을 발매.
  - 2008년 삼림인증(FSC-CoC 인증)을 취득함. 에코50 캠페인을 시작함
  - 2009년 일본정책투자은행으로부터 최고등급의 환경자격부여를 취득함.  
“국내산”의 조립목 합판과 특수 MDF를 조합한 환경배려마루재 ‘포레스하드’를 발매함.

## 라. 삼림총합연구소

### □ 면담자 : 岡裕康(임업경영시스템연구실장)

- 일본에서 목제품 소비는 건축시장의 영향을 받음. 주택건축시장의 변화에 따라 건축부자재로 쓰이는 목제품의 시장도 변화하게 됨. 일본에서는 한신대지진(1995년)이 발생하여 무너진 주택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재래축조공법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게 되었고 주택의 구조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음. 이에 따라 ‘구조 및 건축설비에 관한 규정의 성능규정화’를 포함하는 건축기준법개정(2000년)과 ‘주택의 품질확보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되었음.
- 건축재료의 품질은 건축기준법 제37조 <건축재료의 품질>에, ‘건축물의



기초, 주요구조부에 사용되는 목재, 강재, 콘크리트 기타 건축 재료는 그 품질이 JIS(일본 공업규격) 또는 JAS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일본농림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으로 정해져 있음. 또, 구조설계의 원칙은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36조2<구조설계의 원칙>에,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대해서는 그 용도, 규모 및 구조의 종류별로 토지의 상황에 따라 기중, 서까래, 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해서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하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토압 및 수압 및 지진 기타 진동 및 충격에 대해서 똑같이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해야만 한다.' 라고 정해져 있음.

-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확인 검사의 엄격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기준법의 일부개정(2006년)이 행해졌는데, 이로부터 건축재료에서 품질과 강도 등의 기준에 적합한 JAS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 것으로 여겨짐.
- JAS제제품은 고객이 이용하기 쉽도록 용도별, 제품별로 항목을 정하여 규격화가 행하여지고 있음. 이 때문에 JAS제제품은 전국 어디에서도 일정한 품질의 제품이 입수되어 품질도 보증됨.

○ 한편, 시크하우스와 관련된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축재료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게 되었음.

- 국토교통성은 시크하우스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기준법을 강화하기로 하고 2001년 검토하고 2002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 2003년7월1일에 시행되었음.
- 국토교통성에서 구체적인 기준 등을 검토하여 개정건축기준법의 시행과 함께 사용규제가 실시되었음. 그동안 규제의 방법에 대해서 관계 각성과 협의되어 특히 건축재료 공급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에서는 각각 일본농림규격(JAS) 및 일본공업규격(JIS)에 정해진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과 규제의 방법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되었음.
-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은 각각 JAS와 JIS의 기준개정에 착수하여 소관하는 건축재료에 대해서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의 상위 기준치를 제정하기로 하였음. 또한, 지금까지 표시방법이 달랐던 것을(JAS는 Fco등,

JIS는 Eo등) 통일하여 동일한 표시방법을 취하기로 하였음(F☆☆☆☆ 등).

- JAS, JIS, AQ, 에코마크 등 이러한 라벨링에 일반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함. 그러나 각종 규제와 그린구입법 등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의 취득은 목제품 산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함.

마. 농림수산물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임산물규격반

□ 면담자 : 早川雄司(課長補佐), 宮崎勝司(林産第二係)

- JAS제도는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1950년 법률제175호, 2006년3월1일개정법시행, JAS법)>에 기초하여 농림물자의 품질개선, 생산합리화, 거래의 단순공정화, 사용 또는 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림수산물대신이 제정하였음. 이 제도는 일본농림규격(JAS규격)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JAS마크를 붙이는 것을 인정하는 JAS규격제도와 일반소비자의 선택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대신이 판정한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를 모든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의무화하는 품질표시기준제도 두가지 제도로 되어 있으며, 이 두가지 제도에 의해 농림물자의 생산 및 유통의 원활화, 소비자의 수요에 따른 농업생산등의 진흥 및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임산물에 대해서는 품질표시 기준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로 생선과 가공식품에 대해서 품질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 JAS규격은 농림수산물대신이 농림물자의 종류(품목)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제7조).
  - JAS규격을 제정하는 농림물자의 종류는 식음료품, 유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 또는 이들을 원료로 한 제조품과 가공품임(다만,



(財)日本合板検査会

주류, 의약품, 화장품은 제외). 등록인정기관은 제조업자등에서의 신청을 받아, 농림물자의 종류, 공장마다 인정의 기술적 기준에 기초하여 인정을 행함.

- 임산물인 목질 건재는 10품목(소재, 제재, 합판, 집성재, 플로어링, 단판, 적층재(LVL), 구조용패널, 경골구조공법 구조용 제재, 경골구조공법 구조용 종접합재)에 대해 27규격이 제정되어 있음.

○ 생산된 제품이 JAS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판정하는 것을 자격부여라고 하며, 자격부여를 받은 제품에는 JAS마크를 붙일 수 있음. JAS 자격부여의 수용여부는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JAS 마크가 붙여져 있지 않은 제품도 시장의 유통에는 제한이 없음.

- JAS제도의 보급은 기본적으로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고 시장에서 소비자등에 선호되고 선택되는 것에 관계됨. WTO 기술장벽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아님.

- JAS규격의 자격부여를 위한 검사방법은 농림산물의 종류마다에 각각 농림수산대신이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제품으로부터 시료를 추출(샘플링)해서 검사하고 판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또, 생산방법에 대한 기준의 경우는 생산의 기록의 점검과 정기적인 또는 임의의 현장검사 등의 방법에 의하며, 유통방법에 대한 기준의 경우는 유통과정의 관리기록을 조사하거나 유통시설에 관계되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판정함.

○ 제3자 기관으로서 인정업무를 행하는 조직은 농림물자의 구분마다에 미리 농림수산대신에 신청하고 등록인정기관으로서의 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음(법제1조, 법제17조의5).

- 등록할 때에는 국제적인 기준에의 적합 등의 요건이 요구됨.
- 등록인정기관은 농림물자의 종류마다에 농림수산대신이 정한 인정의 기술적 기준에 기초하여 제조업자와 생산과정관리자 등으로부터 신청에 대한 인정을 행하게 됨. 예를 들면, 제조업자의 인정의 기술적 기준에서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농림물자를 제조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품질관

리의 규정의 정비 등이 요건으로서 정해져 있음. 이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등록인정기관의 인정을 받고 다음의 인정사업자가 되어 JAS규격에 기초하는 자격부여 또는 자격부여의 표시를 행하게 됨.

표 임산물 관련 JAS 등록인정기관

| 등록인정기관명      | 인정품목                                                  | 인정지역                  | 사업소소재지   |
|--------------|-------------------------------------------------------|-----------------------|----------|
| 일본합판검사회      | 합판, 플로어링, 집성재, 단판적층재, 구조용패널 및 경골구조공법구조용종접합재           | 국내 및 외국               | 일본(토쿄)   |
| 전국목재검사연구협회   | 제재                                                    | 북해도외 국내 및 외국          | 일본(토쿄)   |
| 북해도임산물검사회    | 소재, 제재                                                | 북해도                   | 일본(홋카이도) |
| 무트와군루스타리주식회사 | 합판, 플로어링, 집성재, 단판적층재, 경골구조공법구조용종접합재 및 구조용패널           | 외국                    | 인도네시아    |
| NTI          | 제재등(침엽수의 구조용제재, 경골구조공법 구조용제재에 한함. 단, 보존용처리는 제외) 및 집성재 | 외국                    | 노르웨이     |
| TECO         | 집성재, 합판, 단판적층재 및 구조용패널                                | 외국                    | 미국       |
| APA          | 합판, 구조용집성재, 구조용패널 및 구조용단판적층재                          | 북미, 남미, 유럽, 호주 및 뉴질랜드 | 미국       |
| EWPA         | 합판, 단판적층재                                             | 외국                    | 호주       |
| CMSA         | 제재등, 합판, 단판적층재, 집성재, 경골구조공법구조용종접합재 및 플로어링             | 외국                    | 캐나다      |
| 사티우드테크니컬센터   | 합판, 단판적층재, 집성재, 구조용패널 및 플로어링                          | 북중미                   | 캐나다      |
| COFI         | 제재등(경골구조공법 구조용제재에 한함. 단 보존처리는 제외)                     | 북미, 중미 및 남미           | 캐나다      |
| PSI          | 제재등, 집성재, 경골구조공법용 구조용종접합재, 단판적층재, 구조용패널, 합판 및 플로어링    | 외국                    | 미국       |

- 스스로 자격부여를 행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생산과정 관리자 및 유통과정 관리자는 자격부여를 행하고자 하는 농림물자의 종류 및 공장, 포장, 사업소 또는 유통과정마다에 등록인정기관에 인정 신청을 행함(법제14조).
  - 신청을 받은 등록인정기관은 신청자의 관리체제 등이 인정의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가 여부에 대해서 검사하여 인정을 행함.
  -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생산과정관리자, 유통과정관리자는 스스로 제조, 생산 또는 유통하는 제품에 대해서 JAS자격부여에 적합한가 여부를 검사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JAS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음.
  
- 스스로 제조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조공정을 관리하고 제품이 JAS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의 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자는 국내의 판매 및 수입업자 또는 해외의 수출업자로서 등록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스스로 자격부여를 행하고 JAS마크를 붙여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음(법제14조).
  - 이들의 유통업자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자가 단독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정의 기술적 기준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음.
  
- 유기농산물과 지역 닭고기 등에 대해서는 유통과정(도매업자와 수퍼 등의 단계)에서도 JAS마크를 붙인 대형 포장형태에서 소매용 포장으로 소분(小分)하는 경우가 있음(법제15조).
  - 이와 같은 경우에도 대형 포장용기에 붙여진 JAS마크를 소분업자 스스로 작은 포장용기에 다시 붙여서 소비자에 제공될 때 JAS규격에 의한 자격부여를 받은 제품임을 알 수 있음.
  - 이 때문에 소분업자가 소분을 행할 때 JAS마크를 재첩부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음.
  - 소분업자가 JAS마크를 붙이는 경우에는 사업소 및 농림물자의 종류마다에 인정기관에 인정신청을 하고 인정의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가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 인정될 필요가 있음.
  
- 지정농림물자에 대해서 JAS제도와 동등의 수준인 자격부여의 제조를

가졌다고 농림수산성령에서 인정되고 있는 외국에 관해서는 등록인정 기관으로부터 인정의 기술적 기준에 기초하여 인정을 행한 수입업자가 당해 외국으로부터 지정농림물자에 관계된 제품을 수입하여 JAS마크를 붙여 일본 국내에서 유통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음(법제15조의2).

- 이 경우 인정을 받은 수입업자는 당해 외국의 정부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한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그 복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제품을 수입하여 당해증명서와 제품을 확인하고 JAS마크를 첨부하여 판매하도록 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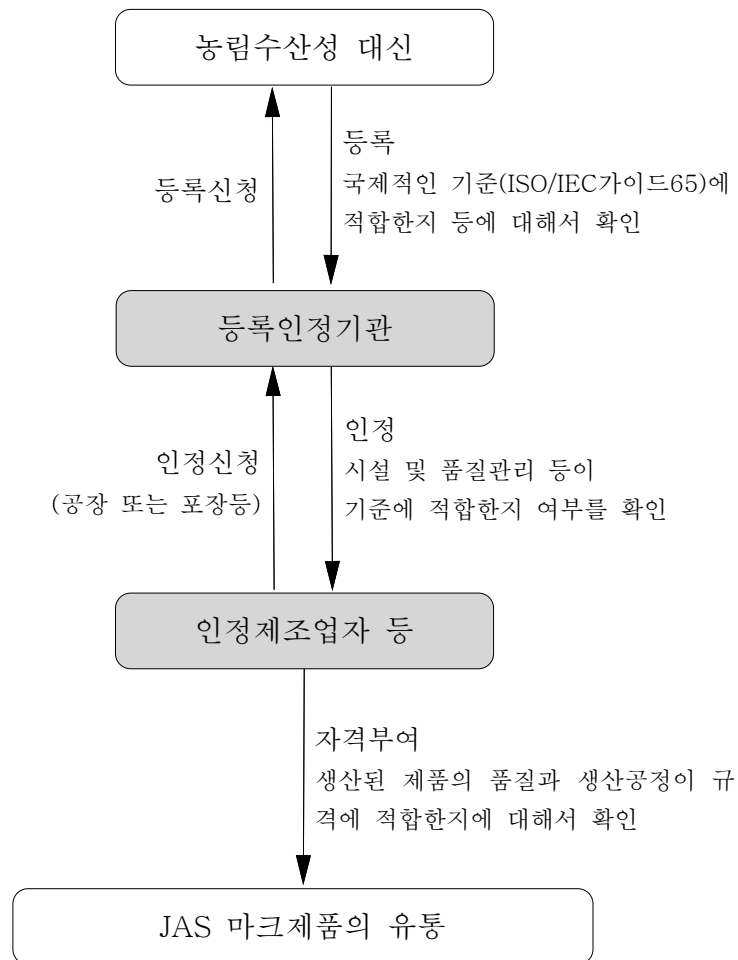


그림. JAS 자격부여의 흐름

- JAS/JIS, AQ마크는 목제품의 성능에 관한 인증이며, 이외에도 목제품 관련 인증제도는 민간레벨에서 다수 행해지고 있음. 예를들면, 합법벌

채임에 대한 표시, 국산재 또는 현산재임을 나타내는 표시, FSC, SGEC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마크 등이 있음.

#### 바. 일본섬유판공업회

#### □ 면답자 : 奈良義幸(업무부장)

- 건축기준법개정에 대응하고 제품의 안전성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2003년3월20일부로 JIS규격(JIS A905섬유판, JIS A5908파티클보드)이 개정되었음. 개정의 요점은 실내 마감재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구분에 관한 것임. 종래는 E0, E1, E2였지만, 개정에서는 E0보다 상위등급을 신설하고 E2를 폐지하였고, 기호도 ☆마크표시로서 상위등급부터 F☆☆☆☆, F☆☆☆, F☆☆로 하였음.
- 이는 JIS만이 아니라 JAS제품등 전부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구분의 기호로서 통일되었음.
- 개정건축기준법에서는 거실의 내장 마무리, 건구, 수납과 설비기구 등에 포름알데히드 방출이 있다고 고시지정된 자재에 대해서 방출량 구분에 따라 재료의 사용면적을 제한하는 것임. 더욱이 고시대상 건재와 자재는 JIS마크, JAS마크가 있는 것과 국토교통대신의 인정평가서가 있는 것으로 되었음.
- 섬유판공업회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등급표시제는 보통의 보드류를 바탕재로 하고 그 위에 화장시트 등을 붙이는 화장판은 비포름알데히드계 접착제를 사용하면 바탕재의 방출량 등급을 상회하지 않는다는 자료에 기초하여 경제산업성 및 국토교통성의 지도하에 2003년2월20일 출발되었음.
- 이에 따라 F☆☆☆☆로 표시된 화장판은 거실의 내장마감재 등에 면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F☆☆☆도 다소 제한은 있지만 충분히 사용가능한 레벨이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F☆☆☆ 이하의 보드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계산공식에 따라 사용량을 정할 수 있음. 그러나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이 번잡스러우므로 매우 가격이 싸지 않다면 계산과정이 필요없는 F☆☆☆☆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임.

○ 표시제도의 요점은 다음과 같음

- 화장판의 바탕재(합판)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등급을 기초로 그 화장판의 방산등급으로 함. 이를 전제로서 다음의 사항의 확인이 필요함. 합판은 PB, MDF의 JIS마크 표시제품으로 포름알데히드방산등급 F☆☆☆☆, F☆☆☆, F☆☆일 것. 또는 대신인정을 받은 바탕판일 것. 화장판을 접착하는 접착제는 비포름알데히드계 접착제이어야 하며 도료도 마찬가지로 함. 포름계 접착제와 도료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으며 별도로 농림수산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함.
- 등록자는 화장판의 가공업자로 함
- 등록료로서 연액 100,000엔 필요함
- 등록된 상품에 한해, 표시가 원칙임.
- 등록된 상품의 유효기간은 기재, 가공방법에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3년중 짧은 기간으로 함.
- 등록료의 청구는 기본적으로 각년도 초에 발행함.

○ 표시규정은 건축기준법에서 규제하는 부위에 사용하는 섬유판 및 파티클보드를 바탕재로 한 화장판의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등급표시에 대해서 국토교통성의 지도를 받아 일본섬유판공업회의 표시제도로써 정한 것임. 이 제도의 운용을 통해 안전한 제품의 공급을 더욱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음과 같은 마크를 붙이게 됨.



| 日本繊維板工業会     |                     |
|--------------|---------------------|
| 放散等級         | F★★★★               |
| 登録番号         | 〇〇〇〇〇〇              |
| 製造者名         | 〇〇〇〇株式会社            |
| 製造年月又はロット番号等 | 〇〇〇に表示              |
| 問合せ先URL      | http://www.jfpma.jp |

| 日本繊維板工業会     |                     |
|--------------|---------------------|
| 放散等級         | F★★★                |
| 登録番号         | 〇〇〇〇〇〇              |
| 製造者名         | 〇〇〇〇株式会社            |
| 製造年月又はロット番号等 | 〇〇〇に表示              |
| 問合せ先URL      | http://www.jfpma.jp |

| 日本繊維板工業会     |                     |
|--------------|---------------------|
| 放散等級         | F★★                 |
| 登録番号         | 〇〇〇〇〇〇              |
| 製造者名         | 〇〇〇〇株式会社            |
| 製造年月又はロット番号等 | 〇〇〇に表示              |
| 問合せ先URL      | http://www.jfpma.jp |

#### 사. 동경 환경EXPO 및 주택건자재EXPO

- 환경엑스포에는 쓰레기 처리기계, 산림 바이오매스 생산 및 가공기계, 재활용품 생산업체 등 환경산업에 관련되는 업체들의 출품이 많았음.
- 이 가운데 도쿄보드 공업주식회사는 건축폐자재를 수집, 리사이클하여 파티클보드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EPD(환경제품선언,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인증을 취득하여 이 마크를 부착하고 있음
  - EPD는 스웨덴에서 개발된 타입Ⅲ 환경라벨의 인증프로그램이며, 세계적으로도 선구적인 존재임.
  - 199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기전자제품, 화학, 식품, 건재 등 폭넓은 산업에서 제3자인증기관에 의한 심사등록이 이루어져 등록된 EPD는 스웨덴 환경관리평의회 웹사이트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음.
  - EPD는 LCA에 기초하여 환경정보를 리플렛 형식으로 공개함. 소비자와 사용자에게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을 통한 환경영향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와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적으로 환경에 배려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함.
  - 일본에서는 JIA(재단법인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 Japan Gas Appliances Inspection Association)에서 인증을 수행하고 있음.

環境製品宣言  EPD<sup>®</sup>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s